

추 가 약 정 서(기업용)

(채무면제 상업어음할인용)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20 년 월 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 인
주 소



20 년 월 일자 할인어음 약정에 추가하여 채무면제 상업어음할인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의 각 조항을 약한다.

제1조 채무면제

제2조에서 정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의뢰할 경우 은행은 본인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환매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며 본인은 동 어음의 배서란에『무담보』또는 『이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또는『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함』등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제2조 채무면제어음 발행인

채무면제어음의 할인은 다음의 업체가 발행한 어음에 한정한다.

채무면제어음 발행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제3조 채무면제어음 대상의 제외

은행은 필요한 경우 제2조에서 정한 발행인을 채무면제어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면제 할인어음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인)
--	----	-----